용산_DK밸리뷰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4)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02월 24일(목) ~ 02월 25일(금)	03월 03일(목) 16:00시 이후	03월 04일(금) ~ 03월 07일(월)(11:00~17: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용산역 견본주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9 상가동 113호,114호(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시 용산구 2021 - 건축과 - 분양신고 - 3호(2021. 07. 07.)로 분양신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호 미만으로 분양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본 건축물은 서울시 용산구 2021 - 건축과 – 신축허가 – 25호(2021.03.10.)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15, 65-231번지 일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664.50㎡
- 건축물 연면적 : 6,201.12㎡(도시형생활주택 : 888.96㎡)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2층~지상3층(일부) 근린생활시설(9호) / 지상3층~16층 업무시설(오피스텔-83실) / 지상17층~20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24세대)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20층 1개동 중 도시형생활주택 총 24세대 중 잔여 20세대
- 주차대수 : 73대

■ 내진설계 등급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진도등급(Ⅶ)입니다.(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입주예정일 : 2022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타입별 모집의 경우)

[단위: : ㎡]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A	4	24.21	9.20	33.41	1.32	34.73	3.80
B	7	26.30	10.00	36.30	1.44	37.74	4.13
C	1	25.60	9.73	35.33	1.40	36.73	4.02
D	4	26.81	10.19	37.00	1.47	38.47	4.21
E	4	25.67	9.76	35.43	1.40	36.83	4.03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각 타입 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대지 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전체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호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건축물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건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설계의 변경은 분양받은 자에게 동의를 받고, 건분법

제7조 2항의 설계의 변경은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외 건분법, 건축법의 경미한 설계변경은 분양 받은 자의 동의 없이 사업관계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근린생활시설 입지와 대지, 건물, 조경, 공지, 건축·기계·전기·설비 등을 공유함에 따라 생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에 대해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점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사업관계자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분양 받은 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획 및 확정되었으며, 면적 정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최대지반가속도(g) 0.2039g 적용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도등급 : Ⅶ

■ 준공예정일 및 입점예정일 : 2022년 10월 말 예정

- 입점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고, 입점 지정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 입점일 (또는 입점 지정일 중 선 도래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입점 지정일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하자(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용승인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 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금액단위: : 원]

타 입	층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대지비	건축비	합 계	(10%) 계약시	(10%) 2022.04.30	(10%) 2022.06.30	(70%) 입주지정일
A	17	1	692,000,000	209,000,000	901,0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630,700,000
	18	1	692,000,000	209,000,000	901,0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630,700,000
	19	1	692,000,000	209,000,000	901,0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630,700,000
	20	1	692,000,000	209,000,000	901,0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630,700,000
B	17	1	766,000,000	232,000,000	998,000,000	99,980,000	99,980,000	99,980,000	698,600,000
	18	2	766,000,000	232,000,000	998,000,000	99,980,000	99,980,000	99,980,000	698,600,000
	19	2	766,000,000	232,000,000	998,000,000	99,980,000	99,980,000	99,980,000	698,600,000
	20	2	766,000,000	232,000,000	998,000,000	99,980,000	99,980,000	99,980,000	698,600,000
C	19	1	737,000,000	223,000,000	960,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672,000,000
D	17	1	752,000,000	228,000,000	980,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686,000,000
	18	1	752,000,000	228,000,000	980,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686,000,000
	19	1	752,000,000	228,000,000	980,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686,000,000
	20	1	752,000,000	228,000,000	980,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686,000,000
E	17	1	737,000,000	223,000,000	960,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672,000,000
	18	1	737,000,000	223,000,000	960,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672,000,000
	19	1	737,000,000	223,000,000	960,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672,000,000
	20	1	737,000,000	223,000,000	960,000,000	96,000,000	96,000,000	96,000,000	672,000,000
소계		20							

Ⅱ 청약신청 및 공급일정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2. 14.)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 및 법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되고,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02월 24일(목) ~ 02월 25일(금) (09:00 ~ 17:30)	03월 03일(목) 16:00시 이후	03월 04일(금) ~ 03월 07일(월)(11:00~17: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용산역 견본주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9 상가동 113호,114호(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용산역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 10,000,000원 (금 일천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수협은행 용산역지점 창구 비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1. 청약신청서(수협은행 용산역지점 창구에 비치)
2. 본인 도장(대리청약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필요)
3.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거래은행 계좌(청약자 본인 명의)
6.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1. 청약신청서(수협은행 용산역지점 창구에 비치)
2.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계좌(청약신청 법인 명의)
6. 법인 대표이사 본인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주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용산역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4.)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을(개인정보의 활용 및 이용 활성화) 적용하고, 기간 종료시 일괄 폐기하기로 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이 각각의 주택형별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인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 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의 유무 (한전 변전시설 인접, 경계벽 등 확인),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개를 초과하여 공간을 구획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입주민의 세대 구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으므로 타입별 확장한 실사용 면적을 분양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03월 03일 (목요일) 16:00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 장소 미 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 사항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03월 04일(금) ~ 2022년 03월 07일(월)	11:00~17:00	DK밸리뷰_용산 견본주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9 상가동 113호,114호(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수협은행	1010-2101-5390	교보자산식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교보자산신탁(주)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을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503호 계약한 홍길동 ⇒ 503홍길동)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시점에 별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에서는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예금주 교보자산신탁(주)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한 대리인으로서 상기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교보자산신탁(주)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대금 반환 등을 포함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지세법 제 3조 1항 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 승계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공급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 (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 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 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전매가 불가능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계약시 (배우자 포함)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외국인의 경우: 본국 대사/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명증명서 • 인감도장(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가능) ※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거주자 우선분양 당첨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외 전부)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법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분양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 취소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금액은 납부금액 중 중도금 납부금액에 한하며 계약금 및 대출이 알선되지 않는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 받은 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관계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개인의 사정(신용불량 거래자, 개인의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 및 대출취급기관의 방침(개인별 또는 세대별 또는 호실별 제한 등)으로 대출한도가 분양 받은 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관계자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받은 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또한,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라도 분양 받은 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의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포함) 분양 받은 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 받은 자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미 납부시 분양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에 의거 분양 받은 자 개인정보,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분양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납부할 이자 및 원금은 분양 받은 자 부담입니다.
- 분양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또는 법인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불가시 자납하여야 합니다.)

V 기타 계약자안내

■ 준공 및 입주예정일 2022년 10월 말 예정

- 입점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될 수 있고, 입점 지정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 입점일 (또는 입점 지정일 중 선도래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입점 지정일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하자(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① “분양사업자”는 위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와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교보자산신탁㈜”가 관리한다.

② 본 계약상 시행자 및 매도인의 책임은 “분양사업자”에게 있고, “교보자산신탁㈜”는 본 사업의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관리자로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

분양계약서 날인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③ “분양사업자”가 부도, 금융거래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분양사업자”가 보유한 본 사업 시행자 및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분양받을 자”는 양도에 동의한다.

④ 건분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대금채권(분양수입금 총액)을 “교보자산신탁㈜”에게 양도하며, “분양받을 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단, 양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로 분양계약이 종료된 경우 “분양받을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의무는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교보자산신탁㈜”는 대리사무계약의 정함에 따라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⑤ 위 분양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교보자산신탁㈜”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사용승인 후 분양관리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제4항의 분양대금채권은 “교보자산신탁㈜”로부터 “분양사업자”에게 양도되고, “분양받을 자”는 이에 동의한다.

VI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형별면적(㎡)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의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입점지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다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 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과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가됩니다.
- 잔금대출은 분양 받은 자 본인이 금융권을 통해 대출하여야 하며 분양 받은 자의 신용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시 분양 받은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관계자에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등을 사업관계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분양 받은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이나,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급 배기구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위탁자 및 수익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의 구성은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과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점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준공 입점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점 후 (가칭)주민자치 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점자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관련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 받은 자와 무관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카다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 확인 후 청약,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보관소 및 음식물 쓰레기함은 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점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철근의 배근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범을 위한 CCTV는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등에 설치되며 세대 기준층 복도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설비 및 시스템

- 실 시공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내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는 천정형 에어컨은 분양가 포함 품목으로 기본설치 제공되며, 별도의 냉매매립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내 보일러실 천장에는 보일러연도, 주방배기 및 환기장치 덕트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내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건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설계의 변경은 분양받은 자에게 동의를 받고, 건분법 제7조 2항의 설계의 변경은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외 건분법, 건축법의 경미한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자의 동의없이 사업관계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단지내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부대시설, 공용홀, 복도,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불빛과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외벽마감,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점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외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변경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 및 인접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본 단지와 높이 차이가 있으며,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법정 주차대수를 근거로 총 73대로 산정되었습니다.
- 우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 특성상 일부 대형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 견본주택에는 오피스텔 B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계약면적 외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및 공용부 타일 마감은 타일 물성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훰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의 유효크기는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받은 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 공간은 각 세대마다 설치되나 일부세대는 별도 공간에 거치되오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은 각층 별도공간에 구성되며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설치공간 내에는 우수관, 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재질, 형상 및 구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일 타입에서도 평면의 방향, 설비기구 배치,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실입점자 및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관계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관련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입점 후 근린생활시설 자치 관리운영 위원회를 결성하여 분양 받은 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키로 합니다.
- 점포의 용도변경은 해당 인·허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점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영업개설 인·허가 등록,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물 추가사항)는 분양 받은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 분양 받은 자는 분양광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분양 받은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의 용도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 받은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자 상호간의 협의로 처리하기로 하며, 사업관계자와는 일체 무관합니다.
- 기존 2개 점포를 1개 점포로 구성 시, 기시공 칸막이 벽체 철거에 따른 비용은 분양 받은 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내력벽 구조 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 전기, 설비 공사 등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건축, 전기 설비 등 해당하는 모든 공사는 분양 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입점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입점증(분양사업자 발행)을 교부 받아야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관계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분양 받은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합니다.
-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입점일과 관계없이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양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받은 자는 본인 계약호실의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 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 통행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분양 받은 자 임의로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조경물 유지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분양 받은 자 부담입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점 시에 대지의 확정 측량 또는 경미한 시공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점 시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점포의 경우 소음 및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단지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점포의 층고/천장고, 창호(출입문 포함)의 크기, 레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 내부에 돌출 기둥이 계획될 수 있으니 분양 받은 자는 계약 전에 기둥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기둥 및 벽체 등의 벽체공유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분양 받은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점포는 외부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광고물(간판 등) 설치는 분양 받은 자 부담으로 합니다.
- 옥외광고물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계획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을 고려하여 지정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점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업체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후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바랍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건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설계의 변경은 분양받은 자에게 동의를 받고, 건분법 제7조 2항의 설계의 변경은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외 건분법, 건축법의 경미한 설계변경은 분양 받은 자의 동의 없이 사업관계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층고, 천장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주차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 내 천장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전기/통신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는 지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별 주방 설치에 따른 연기 배출 시설 및 덕트 공사시에는 인접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소음전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에 화재 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점포별 급수, 공급배관이 설치되며,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며 밸브이후 공사는 입점자 공사 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별로 기본 가스배관(각 점포별 천정 내 분기배관에 밸브마감)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밸브 이후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점포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점포 내에 기계환기 장비와 환기용 디퓨져 및 제연그릴이 설치되어 천정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점포 내 별도의 개별 냉난방기 설치용 실외기실은 구획되어있지 아니한 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 각 점포에는 별도의 온수 배관이 없으므로 필요시 분양 받은 자가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등을 설치(입점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별 주방용 배기는 기본덕트(천장속배기용 분기덕트)만 공급되며 식당 입점 시에는 주방 후드용 덕트 연장 시공 및 후드 설치는 입점자 부담이며, 주방 후드시공 시 방화용풍량조절담파(FVD)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방 후드 내에 소방법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상 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전용면적 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로 인하여 전용면적 내 입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입점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창호에는 화재시 제연 등의 이유로 복도측 창호 하부 또는 출입문 등에 그릴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인허가시 결정된 주차대수이며 건물 내 일부 설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사업관계자 또는 관리업체가 정하는 관리규정이나 입점 후 편성 운영된 자치관리단체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차량 진 출입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는 입점자 또는 분양 받은 자가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인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며, 사용용도를 벗어난 업종의 입점은 불가함. 또한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점포별 간판 설치시, 준공도면에 표기된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준의 변형이나 조정은 입점자간의 관리 규약에 의해 운영 하되, 관련 지자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호실별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별 간판의 위치는 사업관계자가 지정해준 위치에 한해 지자체 옥외광고물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본 분양목적물, 주변 건물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 점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영업허가, 용도변경 등)은 분양 받은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계자는 위 표시물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당시의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점자 또는 분양 받은 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점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입점 업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준하며 분양 받은 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받은 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상계단, 비상 엘리베이터 등 소방/피난 관련 시설은 비상시나 관리용으로 타 시설과 공유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 상의 기준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허가 상의 제반조건 및 법규 기준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자에게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 향후 점포 구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 피난계단의 유효거리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 후 구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 본 건물의 조경, 세부 식재 계획, 지장물 및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일부 점포는 가시성 및 접근성 등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별 한전 계약용량은 점포별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점포별 증설이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전력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 분	분양사업자	신탁사	시공업체	분양대행사	금융기관
회 사 명	(주)디케이밸리뷰	교보자산신탁(주)	(주)디케이건설	㈜더리치에셋	수협은행
법인등록번호	110111-2361783	110111-1617434	110111-6187284	124411-0165771	244235-000989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디케이건설 / 등록번호 서울210060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27, 2층 (문정동, 동일빌딩)
- 분양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소재지 및 지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55, 65-231번지
 - 지목 : 대지
 -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2층~지상 20층
-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건축허가번호 : 용산구 2021-건축과-신축허가-25(2021.03.10.) / 제1회설계변경(2021.06.07.) / 착공신고(2021.07.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방화지구(폐지입안)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본 건물의 건축 용도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분양 받은 자가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구분등기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 상가동 113호, 114호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화 : 1544-6305)